

(報告)

## 檢討報告書

遊園地(東村)地域 解除및 地目變更에 관한 請願

### 1. 提出過程

가. 提出日字 : 1992年 11月 3日

나. 請願人 : 大邱直轄市 東區 孝  
睦1洞 212~82 崔元琮 外199人

다. 紹介議員：大邱直轄市議會  
議員 尹相雄

## 2. 檢討過程

가. 回附日字：1992年 11月 4日

나. 上 程：第15回 大邱直轄市  
議會 臨時會

○ 第3次 建設委員會('92. 11. 13)  
審查保留

라. 檢討期間：1993年3月15日～  
1993年3月16日

## 3. 請願內容(要旨)

### 가. 請願概要

○ 東區 孝睦洞 212番地 一帶(금호주택, 이화촌, 통천사뒷편마을)를 東村遊園地 體育施設地域에서 一般住居地域 또는 一般商業地域으로 用途地域 變更을 要求하는 請願으로서,

○ 이地域 住民들은 1967年 以前부터 東村遊園地內 常習浸水地域에서 어렵게 生計를 꾸려 왔으며, 夏節期에는 浸水로 인하여 한두차례 隣近高地帶로 옮겨야 하는 不便을 겪어 오던중, 1975年 大統領 特別關心事業의 一環으로 浸水地域에서 다소 높은 地域인 現在位置에 建築許可되어 居住하고 있음

### 나. 請願事由

○ 1975年 合法的인 節次에 의하여 建築許可된 住宅으로 當局의 指示에 따라 共有土地를 個人 分割登記까지 마친 지금에 와서 遊園地 體育施設로指定하여, 現在 居住하고 있는 住宅을 撤去하고 再移住 시킴은 있을수 없으며,

○ 또한 1975年 當時 遊園地 地域에 建築許可 되었고, 位置上 遊園地와 別個의 동네이므로 遊園地 地域에서 除外된다고 지금까지 믿어 왔음.

### 다. 遊園地 運動施設 決定의 不當性

○ 現 東村遊園地와 請願對象 地域은 심한 경사와 30여m 이상의 높은 절벽으로 區分되어 있고, 東部工高 學校施設 決定과 道路開設時 殘餘面積이 적어 體育施設로는 機能을 다할 수 없으며,

○ 學校와 遊園地 사이에 住宅이 있으므로서 教育次元에서도 바람직할 뿐아니라, 既存住宅을 撤去하고 體育施設을 하는 것보다는 隣接한 公園 및 遊園地內 유휴 土地를 活用하는 것이 經濟的임

### 라. 撤去豫想地域 住民要求事項

○ 遊園地 體育施設 計劃을 變更하여 請願對象 地域을 一般住

- 居地域 또는 一般商業地域으로 用途變更하여, 現在대로 居住할수 있기를 바라고,
- 만약 遊園地 運動施設로 꼭 해야될 경우는 빠른 時日內 現在와 같은 여건하에서 他地域에라도 住宅을 지을수 있도록 해줄 것을 바라며,
  - 東部工高에 編入되는 撤去對象 住宅의 補償價格을 現實化 해줄 것을 要求함

## 4. 紹介意見(要旨)

- 東區 孝睦1洞 212番地 一帶(금호주택, 이화촌, 통천사 뒷편마을)는 東部工業高等學校 施設決定 및 東村遊園地 施設變更決定에 따라一部는 東部工高에 編入되고, 나머지는 運動施設에 編入되므로 인하여 住民 200여 세대가 삶의 터전을 잃고 다른 지역으로 移住해야할 形便이나,
- 學校와 遊園地가 直接 접하고 있는 것 보다는 住宅이 있으므로서 緩衝地 役割을 할수 있으며, 또한 既存 住宅을 헐고 體育施設을 造成함은 不當하므로,
- 東部工業高等學校 學校敷地內에 編入되는 住宅을 除外한 나머지 住宅에 대하여는 一般住居地域 또는 一般商業地域으로 用途地域을 變更함이 妥當하다는 意見임

## 5. 檢討內容

## 가. 東村遊園地 現況

- 位 置 : 대구직할시 동구 효목동, 수성구 만촌동 일원
- 面 積 : 1,461,231 m<sup>2</sup> (442,022畝)
- 用途地域 : 자연녹지지역
- 土地所有者別 面積

計	國有地	市有地	私有地	備考
1,461,231m <sup>2</sup> (100%)	751,017m <sup>2</sup> (51.4%)	203,882m <sup>2</sup> (13.9%)	506,332m <sup>2</sup> (34.7%)	

## ○ 遊園地 決定經緯

- '65. 2. 2 : 유원지 결정
- '69. 7. 12 : 유원지 변경결정(하천등 편입)
- '75. 12. 4. : 유원지 지적고시(망우공원 제척)
- '82. 8. 13. : 유원지 변경결정(파크호텔부지 일부제척)
- '82. 9. 22. : 유원지 세부시설 결정
- '87. 12. 3. : 유원지 변경결정(효동국민학교 제척)
- '88. 8. 2. : 유원지 변경결정(동부여고 제척)
- '92. 7. 31. : 유원지 조성계획 결정고시

## 나. 大邱東部工業高等學校 施設決定(案)

## ○ 學校現況

- 위치 : 동구 효목동 212-15

- 면적 : 31,917m<sup>2</sup> (9,654평)
- 학급 및 학생수 : 39학급  
1,989명
- 시행자 : 대구직할시 교육감
- 施設決定 推進經緯
  - '92. 1. 29 : 학교시설 결정  
신청(사교육감)

- '92. 6. 3. : 공람공고
- '92. 6. 24. : 제2회 지방도  
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 '92. 10. 29. : 제14회 대구  
직할시의회(임시회)의결
- 編入土地 現況

구 分	計		私 有 地		國 公 有 地		備 考
	筆 數	面 積	筆 數	面 積	筆 數	面 積	
계	52필	32,191m <sup>2</sup>	49필	32,080m <sup>2</sup>	3필	111m <sup>2</sup>	
학 교	48	31,917	45	31,806	3	111	
도로	4	274	4	274	—	—	

※ 編入住宅 棟數 : 금호주택 13棟

#### 다. 請願對象 集團部落 現況

部 落 名	住 宅		世 帶 數	面 積
	棟	號 數		
3 개 부 락	198동	175호	356세대	35,305m <sup>2</sup> (10,680평)
금 호 주 택	39	47	70	10,909 ( 3,300평)
이 화 촌	130	106	231	16,198 ( 4,900평)
통 천 사 뒷 편	29	22	55	8,198 ( 2,480평)

#### 라. 關聯民願 處理內容

- 陳情日字 : '92. 10. 27
- 陳情人 : 동구 효목1동 212-67 손봉익 外199名
- 接受機關 : 大邱直轄市
- 陳情內容 : 請願內容과 같음
- 回示內容
  - 遊園地 造成計劃上 住民들이 살고 있는 東區 孝睦洞

212番地 一帶의 集團部落은 地形與件에 調和되도록 造成되는 多目的運動場斗 道路, 綠地등으로 施設을 設置하고자 計劃되어 있으므로, 現在는 遊園地에서 一般住居地域 또는 商業地域으로 用途變更是 不可함.

6. 檢討意見

本件은 東區 孝睦洞 212番地 一帶에 位置한 금호주택, 이화촌 및 통천사 뒷편 마을의 東村遊園地 地域을 一般住居地域 또는 一般商業地域으로 用途地域을 變更해 줄 것을 要求하는 請願임.

이 地域은 1965年 遊園地로 決定된 以後, 1982年 遊園地 細部施設 計劃에 금호주택은 식당으로 이화촌 및 통천사 뒷편 마을은 綠地로 되어 있었으나, 지난 7月31日 遊園地 活性化를 위한 造成計劃 樹立時 금호주택 및 이화촌 地域은 運動施設로 決定告示된 地域으로서, 地域與件上 用途地域 및 都市計劃施設을 變更하지 않을 境遇, 行政의 一貫性 維持는 기할수 있으나 都市計劃施設의 長期 未執行으로 既存 集團部落에 대한 私有 財產權 行事가 곤란하여 民願이 상존할 것으로豫想되고, 未開發로 인한 無許可 建物의 계속적인放置로 住居環境이 열악할 뿐 아니라, 公共用地인 學校敷地 隣近에 遊園地 施設을 두는 것은 都市計劃上 機能이 相互 부합되지 않으며, 現在로서는 財源確保가 困難하여 早期에 遊園地 開發이 어려운 實情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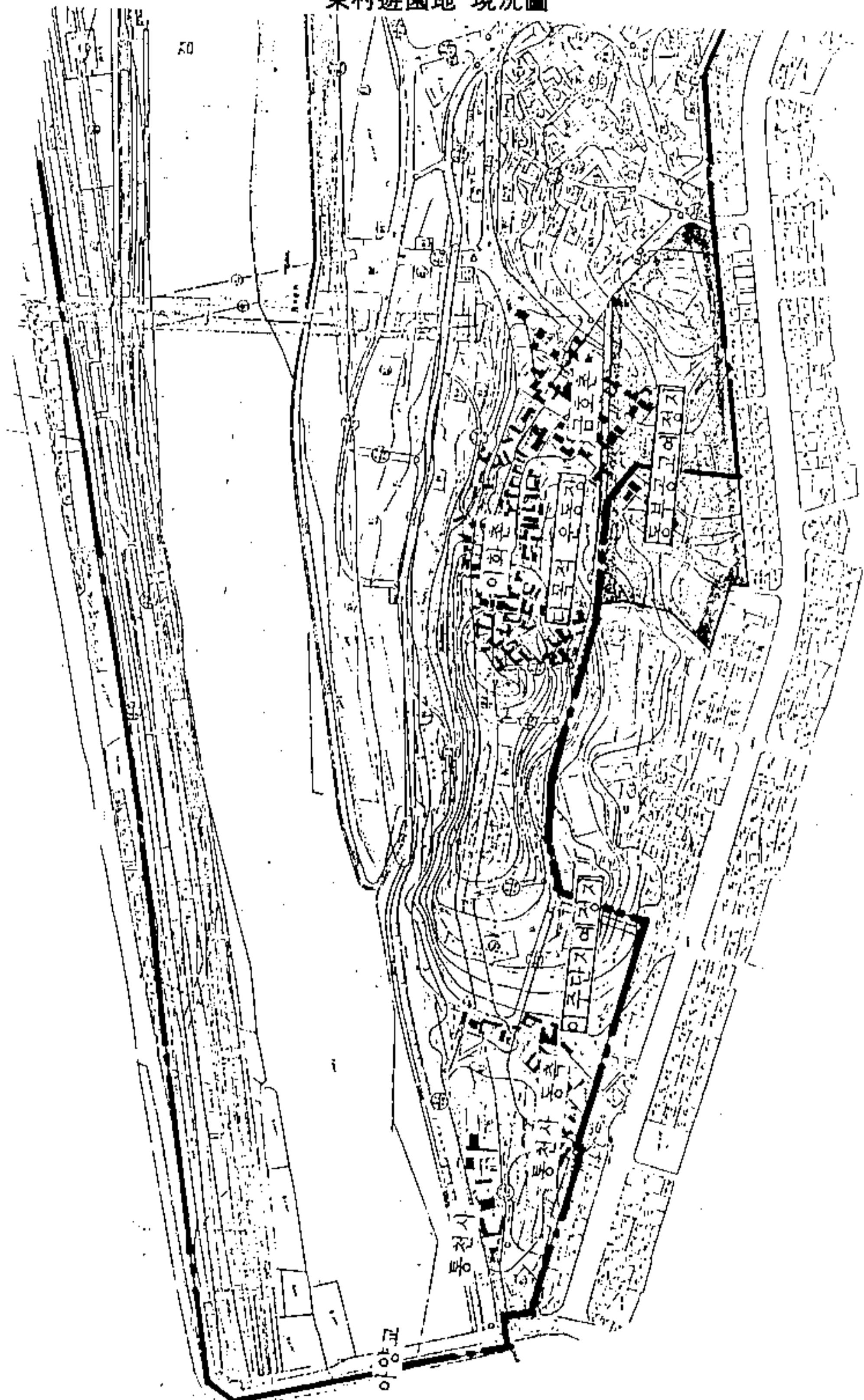
請願內容을 綜合的으로 檢討해 본 結果, 民願을 解決하고 遊園地 開發時 集團部落 移住에 따른 費用負擔을 줄일 수 있도록 遊園地 機能이 적고 集團部落이 位置한 民願이 야기된 地域을 遊園地 施設에서 除斥하여 住宅地로 開發하는 것이 土地利用上合理的인 것으로 보이나, 都市長期開發 指針인 都市基本計劃 變更이 先行된후에 施設變更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思料됨

## 7. 添附書類

- 東村遊園地 現況圖
- 關聯法令
  - 都市計劃法 第10條의2(都市基本計劃의 樹立)
  - 都市計劃法 第12條(都市計劃의 決定)
  - 都市計劃法 第17條～第22條(地域·地區 및 區域의 指定)

(다음페이지에 계속)

東村遊園地 現況圖



● 都市計劃法 [1971. 1. 19]  
法律第2291號]

第10條의 2(都市基本計劃의 樹立) ①

서울特別市·直轄市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도시計劃區域을 管轄하는 市長 또는 郡守는 20年을 單位로 하여 長期都市開發의 方向 및 都市計劃立案의 指針이 되는 都市基本計劃을 樹立하여 建設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承認을 얻은 都市基本計劃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建設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基本計劃을 승인하고자 할 때는 미리 관계地方議會의 의견을 듣고(市長 또는 郡守가 미리 해당 地方議會의 의견을 들어 申請한 경우를 제외한다)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후 第68條의 規定에 의한 中央都市計劃委員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改正 91. 12. 14>

③ 建設部長官은 第1項에 의하여 都市基本計劃을 承認한 때에는 이를 市長 또는 郡守에게 送付하고, 市長 또는 郡守는 지체없이 이를 公告하고 一般에게 供覽시켜야 한다.

④ 市長 또는 郡守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都市基本計劃에 대하여 5年마다 그 安當性與否를 檢討하여 都市基本計劃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改正 91. 12. 14>

⑤ 都市基本計劃의 樹立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81. 3. 31]

第12條(都市計劃의 決定) ① 都市計劃은 建設部長官이 職權 또는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都市基本計劃立案者의 申請에 의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地方議會의 의견을 듣고(申請人이 미리 해당 地方議會의 의견을 들어 申請한 경우를 제외한다) 中央都市計劃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이를 決定한다. 決定된 都市計劃을 變更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輕微한 事項의 變更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1. 12. 14>

② 建設部長官은 國防上 機密(國防部長官要求가 있는 것에 限한다)을 要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都市計劃의 全部 또는 一部에 관한 決定에 있어 그 部分에 대하여는 관계地方議會의 의견과 中央都市計劃委員會의 議決節次를 省略할 수 있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에 필요한 都市計劃에 관한 중요한 基準 및 都市計劃施設基準에 관하여는 建設部令으로 정한다.

④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결정된 도시계획도면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개정 72. 12. 30)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計劃의 決定을 申請하는 경우에는 建設部令이 정하는 書類와 圖面을 첨부하여야 한다. (新設 91. 12. 14)

## 第2節 地域·地區 및 區域의 指定

第17條(地域의 指定) ① 建設部長官은 都市計劃區域안에서 土地의 經濟的이며 效率的인 利用과 公共의 福利增進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 地域의 指定을 都市計劃으로 決定할 수 있다.

1. 住居地域：居住의 安寧과 健全한 生活環境의 保護를 위하여 필요한 때
2. 商業地域：商業과 其他 業務의 便益의 增進을 위하여 필요한 때
3. 工業地域：工業의 便益과 增進을 위하여 필요한 때
4. 綠地地域：保健衛生·公害防止·保安과 都市의 無秩序한 擴散을 防止하기 위하여 綠地의 保全이 필요한 때

② 建設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域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시 細分하여 그 指定을 都市計劃으로 決定할 수 있다.

第18條(地區의 指定) ① 建設部長官은 都市計劃區域안에서 公共의 安寧秩序와 都市機能의 增進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 地區의 增進을 都市計劃으로 決定할 수 있다.

(개정 72.12.30, 79.4.17, 91.12.14)

1. 風致地區：都市의 自然風致를 維持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2. 美觀地區：都市의 美觀을 維持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3. 高度地區(最低高度地區·最高高度地區)：都市의 環境造成 및 土地의 高度利用과 그 增進를 위하여 建築物의 높이의 最低限度 또는 最高限度를 規制할 필요가 있는 때
4. 防火地區：都市의 火災 및 기타의 災害의 危險을豫防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5. 내지 8. 削除(91. 12. 14)
9. 保存地區：文化財 및 중요 施設物의 保護와 保存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削除 (91. 12. 14)
11. 駐車場整備地區：駐車場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된 地區
12. 公航지구：공항시설의 보호와 航空機의 安全運航을 위하여 필요한 때

13. 施設保護地區：學校施設의 보호와 港灣 및 業務機能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② 건설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지구를 다시 세분하거나 그 지구 이외의 지구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72. 12. 30>

第19條(地域·地區 및 區域안의 行爲制限等) ① 第2章 第2節(第17條 내지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地域·地區 및 區域안에 있어서의 建築 기타의 行爲의 制限 및 禁止에 관하여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建築法 및 기타의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改正 91. 12. 14>

② 削除 <91. 12. 14>

③ 保存地區안에서의 建築物 기타施設의 建築 또는 設置에 관한 制限은 다음 各號에 의한다.

<改正 89. 12. 30 法4183>

1. 文化財의 保存을 위하여 指定된 保存地區안에서는 文化財保護法의 適用을 받는 文化財를 직접 管理·保護하기 위한 建築物 기타 施設 이외에는 이를 建築 또는 設置할 수 없다. 다만, 市長 또는 郡守가 그 文化財의 保存上 支障이 없다고 認定하여 文化部長官의 承認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國防上 중요한 施設物의 保存管理를 위하여 指定된 保存地區안에서는 그 指定目的에 違背되는 建築物을 建築하거나 施設을 設置할 수 없다. 다만, 市長 또는 郡守가 그 施設物의 保存管理에 支障이 없다고 認定하여 國防部長官의 承認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0條(특정시설제한구역의 지정)

① 건설부장관은 도시에 있어서의 산업과 인구의 과대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공장, 학교, 중앙도매시장등의 특정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가 제한될 구역(이하 “특정시설제한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건설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시설제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그 구역안에서 설치가 제한될 특정시설의 종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특정시설제한구역 지정 당시 설치가 제한될 특정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받아 공사를 시행중에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의 지정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第20條의2(市街化調整區域의 指定) ①

建設部長官은 都市の 無秩序한 市街化를 방지하고 都市の 計劃的·段階的인 開發을 도모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一定期間 市街化를 留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市街化調整區域의 指定을 都市計劃으로 決定할 수 있다.

② 市街化調整區域의 指定에 관한 都市計劃의 決定은 第1項 市街化留保期間이 滿了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效力を喪失한다. 이 경우에 建設部長官은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③ 市街化調整區域안에서는 第2條第2項第1號 나目的 都市計劃事業중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事業에 한하여 이를 施行할 수 있다.

④ 第1項에 의하여 指定된 市街化調整區域안에서는 第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 1에 해당하는 行爲에 한하여 市長 또는 郡守의 許可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다.

1. 農業·林業 또는 漁業用의 建築物 중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種類와 規模의 建築物을 建築하는 行爲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行爲

2. 竹木의 伐採·栽植이나 土石의 採取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輕微한 行爲

⑤ 市街化調整區域의 指定 당시 이미 관계法令에 의하여 建築物의 建

築, 工作物의 設置 또는 土地의 形質의 變更에 관하여 許可를 받아 (관계法令에 의하여 許可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工事 또는 事業에着手한 者는 第4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長 또는 郡守에게 申告하고 이를 계속 施行할 수 있다.

⑥ 市長 또는 郡守는 第4項의 許可를 할 때에는 미리 그 許可目的의 行爲와 관계있는 公共施設의 管理者 또는 당해 許可目的의 行爲(당해 行爲에 관한 工事を 포함한다)에 의하여 設置되는 公共施設을 管理하게 될 者의 承認을 얻거나 그와 協議하여야 한다.

⑦ 市街化調整區域안에서 第4項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建築物의 建築이나 土地의 形質의 變更등의 行爲를 한 者에 대하여는 第4條第5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91. 12. 14>

⑧ 第4項의 許可에 관한 基準·許可申請節次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81. 3. 31]

## 第20條의3(詳細計劃區域의 지정) ①

建設部長官은 都市計劃區域안에서 土地利用을 합리화하고 都市の 機能·美觀 및 環境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詳細計劃區域안의 지정을 都市計劃으로 決定할 수 있다.

② 詳細計劃區域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地域을 그 대상으로 한다.

1. 宅地開發促進法에 의한 宅地開發豫定地區

2. 產業立地및開發에 관한法律에 의한 工業團地

3. 都市再開發法에 의한 再開發區域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區域

③ 市長 또는 郡守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詳細計劃區域이 지정된 날부터 2年이내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된 詳細計劃을 立案하여 建設部長官에게 都市計劃決定을 申請하여야 한다.

1. 地域·地區의 지정 및 변경

2. 都市計劃施設의 配置와 규모

3. 街區 및 劃地의 규모와 造成計劃

4. 建築物등의 用途制限, 建築物의 建蔽率 및 容積率과 높이의 最高限度와 最低限度

5. 기타 建設部分이 정하는 사항

④ 市長 또는 郡守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詳細計劃을 立案함에 있어서는 道路·水道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都市計劃施設의 처리·供給·收容能力 및 규모가 建築物의 總容積과 적정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91. 12. 14]

#### 第20條의4(廣域計劃域區域의 지정)

① 建設部長官은 廣域施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여러 都市의 機能을 상호 연계시킴으로써 都市 전체의 균형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環境保全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2이상의 都市計劃區域을 대상으로 하는 廣域計劃域의 지정을 都市計劃으로 決定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廣域計劃域안에서 廣域計劃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都市別 機能分擔에 관한 사항

2. 環境保全에 관한 사항

3. 廣域施設의 配置와 규모에 관한 사항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③ 廣域計劃을 立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道知事·市長 또는 郡守가 協議에 의하여 立案할 者를 지정한다. 다만, 建設部長官은 國家計劃과 관련된 경우에는 職權 또는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의 요청에 의하여 관할市長 또는 郡守의 의견을 들은 후 스스로 立案할 수 있다.

④ 第11條第3項의 規定은 第3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本條新設 91. 12. 14]

#### 第20條의5(廣域施設의 設置·관리 등)

① 廣域施設의 設置·관리는 第16條·第23條 및 第25條의 規定에 의한다. 다만, 관계 市長 또는 郡守가 協約을 체결하거나 協議會등을 구성하여 設置·관리할 수 있다.

②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協約의 체결 또는 協議會등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관할道知事가 廣域施設을 設置·관리할 수 있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國家計劃으로 設置하는 廣域施設은 特別法에 의하여 廣域施設의 設置·관리를 事業目的으로 하거나 事業種目으로 하여 設立된 法人이 이를 設置·관리할 수 있다.

④ 地方自治團體는 環境汚染이 심하게 발생하거나 해당 地域의 개발이 현저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는 廣域施設을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관할區域에 設置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汚染防止 위한 사업 또는 당해 地域 住民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施行하거나 이에 필요한資金을 당해 地方自治團體에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法律에 의한다. [本條新設 91. 12. 14]

第21條(開發制限區域의 指定) ① 建設部長官은 都市의 無秩序한 擴散을 防止하고 都市周邊의 自然環境

을 保全하여 都市民의 健全한 生活環境을 確保하기 위하여 또는 國防部長官의 要請이 있어 保安上 都市の 開發을 制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都市開發을 制限할 區域(이하 “開發制限區域”이라 한다)의 指定을 都市計劃으로 決定할 수 있다. (개정 72. 12. 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서는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면적의 분할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하여 허가를 받아(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개정 72. 12. 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될 범위의 범위 기타 개발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안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72. 12. 30)

제22조(都市開發豫定區域의 指定)

① 建設部長官은 도시에 있어서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현상을 완화하

고 그 適正한 配置를 함으로써 都市의 均衡있는 開發을 圖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도시의 인근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基準이상의 面積과 要件을 갖춘 一定한 地域을 都市開發豫定區域(이하 “開發豫定區域”이라 한다)으로 豫定할 수 있다.

〈개정 72. 12. 30〉

② 第1項의 指定에 있어서 建設部長官은 內務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하며, 그 指定은 都市計劃으로 決定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開發豫定區域이 指定된 때에는 建設部長官은 3年내에 그 區域안에서 實施할 都市計劃을 決定하여야 한다.

④ 第3項의 期間내에 開發豫定區域 안에서 實施할 都市計劃이 決定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期間의 滿了로써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은 그 效力を 責失한다.

⑤ 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이 결정될 때까지 개발예정구역안에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72. 12. 30〉